

「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」은 저소득·임금체불 근로자 등 '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'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·지원됩니다.

#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 안내



## 용자대상

용자종류	대상
의료비 / 혼례비 장례비 /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	▶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259만원(20년 기준) 이하인 근로자 ※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것 ※ 비정규직(기간제, 단시간, 파견 일용)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월평균소득 317만원(20년 기준) 적용
임금감소생계비	▶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3개월 이상 감소하였을 것 ② 감소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%이상 감소하였을 것 ③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(20년 기준)이하일 것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월평균소득 222만원(20년 기준) 적용
소액생계비	▶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용자대상 월소득이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%이상 감소하였을 것 ② 용자대상 월소득이 181만원(20년 기준)이하일 것 ※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용자대상 월소득 222만원(20년 기준) 적용
임금체불생계비	▶ 가동 중인(휴업포함)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또는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(휴업수당, 퇴직급여 포함)이 체불되었을 것 ② 연간 소득액(배우자 합산)이 5,700만원(20년 기준) 이하일 것 ※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30일 이상이고, 체불임금이 651,320원(20년 기준)이상일 것

◆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고 판정받은 근로자는 재직근로자로 판단함

## 용자요건 및 한도액

용자종류	용자요건	신청기한	한도액
의료비	▶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,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(또는 납부하여야 할) 비용 ②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/ ③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이용에 드는 비용	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	1,000만원 (실제 비용 내)
혼례비	▶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	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	1,250만원
장례비	▶ 근로자 본인, 배우자,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	사망일부터 90일 이내	1,000만원
부모요양비	▶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모든 비용	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	부모(또는 조부모) 1명당 연 500만원
자녀학자금	▶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대학교 재학 자녀 포함	자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기간 중	자녀 1명당 연 500만원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연 700만원
임금감소생계비	▶ 근로자가 소속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	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 10일 이내	1,000만원 (감소임금 범위)
소액생계비	▶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,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	사유발생일부 6개월 이내	200만원
임금체불생계비	▶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 - 단,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	이미 발생한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	1,000만원 (체불임금 범위)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2,000만원

◆ 2종류 이상 용자신청 시 1인당 총 용자한도 2,000만원 이내

## 용자조건

용자금리	연 1.5%
보증방법	▶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※ 보증료 : 연 0.9%(임금체불생계비 연 1%) 별도 선공제(본인부담)
상환기간	▶ 일반근로자 1년 거치 3년 /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인 선택
장례비	▶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 1년 거치 3년 / 1년 거치 4년 / 2년 거치 4년 /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인 선택

◆ 2종류 이상 용자신청 시 1인당 총 용자한도 2,000만원 이내

## 신청 및 처리절차

	인터넷	방문
신청	근로복지서비스 <a href="http://welfare.kcomwel.or.kr">http://welfare.kcomwel.or.kr</a>	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(전국 60개소)
처리절차	신청서 접수 관할지사 배정 담당자 확인 예비신청	서류제출 (예비신청자에 한함) 용자대상자 결정 신용보증서 발행 기업은행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한 대출실행 (결정일부 15일 이내)